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고광민 의원입니다.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
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
자치구의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을 일원화하여
불필요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
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,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
‘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’으로
명확히 규정하였고,
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과
동일하게 조정하여 소규모 건축허가 대상 분양건축물에 대한
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